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659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1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614)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(김윤수),
②(주)소암컨설팅(김중열)

나. 전화번호 : ①055-237-2671, ②042-863-2830

2. 명칭 :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수자원 > 댐

<기술의 요지>

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방 하부에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고,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,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의 위치 및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누수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이다.

<범위>

온도분포측정장치를 통해 측정된 지중온도를 활용하여 산출장치에서 지중의 온도변화를 산출하고 이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지하수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7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